

2018년 곡성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곡성군수 (인)



-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61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94억원이 증가(감소)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80억원)보다 236억원이 많(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3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9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8억원입니다.
- ◆ 우리 시(도)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6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8%입니다.
- ◆ 우리 시(도)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8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지속적인 국비활동 등으로 동종자치단체 대비 7%나 많은 상황이나,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추가적인 세원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okseo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김민관(061-360-8412)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라남도 곡성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616	3,122	494	3,380	3,071	309
	세출예산	3,616	3,122	494	3,380	3,071	30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6.66	14.04	2.62	14.49	13.87	0.6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6.8	64.44	2.36	67.03	64.52	2.51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38	69	-108	25	15	10
재정운영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곡성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1,642	323,745	0	20,310	17,58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73,952	293,193	287,698	312,240	361,64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8,621	100	259,705	100	263,979	100	290,060	100	323,745	100
지방세	9,580	3.85	10,100	3.89	11,000	4.17	12,782	4.41	13,037	4.03
세외수입	7,525	3.03	9,223	3.55	9,532	3.61	9,558	3.30	10,080	3.11
지방교부세	131,667	52.96	129,770	49.97	127,277	48.21	144,861	49.94	161,000	49.73
조정교부금 등	1,335	0.54	1,335	0.51	1,335	0.51	1,335	0.46	1,335	0.41
보조금	92,712	37.29	101,275	39	101,834	38.58	103,132	35.56	107,475	33.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02	2.33	8,002	3.08	13,001	4.92	18,391	6.34	30,819	9.5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곡성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1,642	323,745	0	20,310	17,58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73,952	293,193	287,698	312,240	361,64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8,621	100	259,705	100	263,979	100	290,060	100	323,745	100
일반공공행정	16,619	6.68	13,694	5.27	15,094	5.72	16,556	5.71	18,634	5.76
공공질서 및 안전	9,177	3.69	9,106	3.51	10,978	4.16	62,76	2.16	6,488	2.00
교육	1,270	0.51	1,894	0.73	1,323	0.50	1,507	0.52	1,726	0.53
문화 및 관광	20,230	8.14	17,866	6.88	17,039	6.45	22,144	7.63	30,106	9.30
환경 보호	16,568	6.66	23,720	9.13	16,200	6.14	12,779	4.41	13,135	4.06
사회 복지	43,754	17.60	49,599	19.10	49,436	18.73	54,428	18.76	57,482	17.76
보건	5,532	2.23	5,332	2.05	4,453	1.69	4,644	1.60	5,933	1.83
농림해양수산	53,997	21.72	53,584	20.63	56,167	21.28	60,567	20.88	68,232	21.08
산업·중소기업	1,900	0.76	1,722	0.66	2,345	0.89	3,840	1.32	1,660	0.51
수송 및 교통	6,019	2.42	7,186	2.77	6,947	2.63	9,460	3.26	9,651	2.98
국토 및 지역개발	21,204	8.53	19,623	7.56	27,949	10.59	28,760	9.92	38,876	12.01
과학기술	52	0.02	84	0.03	99	0.04	98	0.03	98	0.03
예비비	2,823	1.14	3,550	1.37	2,960	1.12	4,919	1.70	4,804	1.48
기타	49,476	19.90	52,745	20.31	52,988	20.07	64,081	22.09	66,920	20.6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곡성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312,240	361,642	49,402	15.82
곡성군	312,240	361,642	49,402	15.82
교육청	-	-	-	-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 : 해당없음
-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kseong.go.kr/main/?pid=618>)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곡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6.66 (7.14)	323,745 (323,745)	53,936 (23,117)	269,810 (269,810)	0	0 (30,819)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9.21	10.52 (7.44)	12.70 (7.78)	14.04 (7.70)	16.66 (7.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곡성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등 세수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16.66%로 낮은수준이나, 지속적인 추가세원 발굴노력으로 상승추세이며 유사 지자체보다 2.17%p 높습니다.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곡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8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80 (57.28)	323,745 (323,745)	216,271 (185,452)	107,475 (107,475)	0	0 (30,849)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2.71	61.00 (57.92)	61.42 (56.50)	64.44 (58.10)	66.80 (57.2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곡성군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격차가 5%가까이 낮았으나, 최근 3년간 교부세확충과 국고예산 확보 노력 등으로 지속 상승하여 그 격차가 0.23%p까지 좁혀졌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곡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2,037	336,441	1,259	1,600	341	30,919	336,783	-34,746	-3,827
일반회계	292,926	311,581	0	0	0	25,019	311,581	-18,655	6,364
기타 특별회계	9,091	17,510	1,259	1,600	341	5,900	17,852	-8,760	-2,861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19	7,350	0	0	0	0	7,350	-7,331	-7,331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 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7,387	-11,929	-17,529	-16,229	-34,746
통합재정수지 2	-72	7	200	6,924	-3,827

☞ 2018년도 곡성군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 38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자체 매칭부담액이 커진 것에 크게 기인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곡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88,527	409,814	428,504	451,345	477,241	2,155,431	5.30%
자 체 수 입	30,294	31,492	32,652	33,918	34,959	163,315	3.60%
이 전 수 입	297,805	318,315	340,295	363,855	389,113	1,709,383	6.9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429	60,008	55,557	53,573	53,170	282,737	-3.10%
세 출	388,527	409,814	428,504	451,345	477,241	2,155,431	5.30%
경 상 지 출	93,532	96,069	94,551	94,054	106,738	484,944	3.40%
사 업 수 요	294,995	313,745	333,953	357,291	370,504	1,670,488	5.9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곡성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5	12,784
여성정책추진사업	6	2,80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	9,46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51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kseong.go.kr/main/?pid=632>)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곡성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61,642	93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93	
지역활성화과	오산 운곡리 농로 포장	8	신규사업
지역활성화과	삼기 농소2구 마을 샘터 살리기 사업	10	"
지역활성화과	진입로 환경정비사업	30	"
지역활성화과	오곡 명산 석축공사	15	"
지역활성화과	오곡 미산3구 아스콘 포장	10	"
지역활성화과	오곡 오지3구 유선각 보수공사	10	"
지역활성화과	죽곡 봉정 체험마을 시설 보강	10	"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곡성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4	103	260	247	360,405	306,003	54,403
의회사무과	1	1	4	2	764	1,242	-478
기획실	1	5	10	8	13,774	14,787	-1,013
복지실	1	9	27	28	61,360	56,841	4,519
행정과	1	11	30	16	28,434	24,111	4,323
재무과	1	2	6	6	41,042	32,833	8,209
민원과	1	3	9	10	8,914	7,603	1,311
관광문화과	1	12	27	24	38,377	26,239	12,137
환경과	1	6	16	26	24,889	22,191	2,698
안전건설과	1	8	22	15	21,148	16,275	4,872
경제과	1	9	18	20	4,547	6,849	-2,302
지역활성화과	1	5	11	8	35,034	23,971	11,063
농정과	1	10	22	24	48,525	41,435	7,090
산림과	1	3	8	11	12,555	14,397	-1,842
농촌지원과	1	4	8	12	3,116	3,598	-483
기술보급과	1	3	8	9	3,975	1,917	2,057
보건과	1	4	10	14	6,657	5,121	1,535
곡성읍	1	1	6	0	1,197	1,040	157
오곡면	0	0	0	0	652	560	92
삼기면	1	1	3	2	546	477	69
석곡면	0	0	0	0	798	747	51
목사동면	1	1	2	2	582	454	128
죽곡면	1	1	3	2	640	607	32
고달면	0	0	0	0	505	438	67
옥과면	1	1	3	2	800	676	124
입면	1	1	3	2	559	515	44
검면	1	1	2	2	589	635	-46
오산면	1	1	2	2	428	443	-15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kseong.go.kr/main/?pid=632>)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66	66.8	17.76	18.84	60.49	183.65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kseong.go.kr/main/?pid=632>)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3	-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1	221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4	54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7	
	의원국외여비		23	
지방보조금		31,992	12,181	-19,81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7	917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87	987	-
공무원 일·숙직비		1인(50천원)	1인(50천원)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6-1. (참고)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최근 3년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2015년 ~ 2017년)

(단위 : 천원)

구 분	행정운영경비	비 고
3년 평균	48,298,902	
계	144,896,708	
2015년	47,418,224	
2016년	47,576,322	
2017년	49,902,162	

○ 산정공식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2015년 ~ 2017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

○ 총액한도액 = 48,298,902 × 0.0035 = 169,046천원

→ 산정방법에 의한 산정 결과 전년도 174,900천원보다 감소하여 아래의 별도 산식 적용

○ 최종한도산정 = 174,900 × (1+0.003) = 175,424천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하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편성

■ 지방의회관련 경비

○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2015년 ~ 2017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비 고
3년 평균	103,132	41,825	39,467	21,840	
계	309,397	125,477	118,400	65,520	
2015년	101,674	40,794	39,040	21,840	
2016년	102,674	41,154	39,680	21,840	
2017년	105,049	43,529	39,680	21,840	

○ 산정공식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 × (1+0.176) + 지방의원 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총액한도액 = 41,825천원×(1+0.297) + 39,467천원×(1+0.176) + 21,840천원×(1+0.05)
= 54,247천원 + 46,413천원 + 22,932천원 = 123,592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 단, 의장 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회)의 회장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 추진비 당초예산액 평균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의원국외여비 :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 예외 :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 추가편성 가능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산정공식 :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 가능

■ 지방보조금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 31,992백만원
- 산정공식 : 2017년도 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 28,453백만원 × (1 + 0.1785) = 22,531백만원
 - ※ 단, 총한도액 증가율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전체예산 증가율 초과 불가
- 최종산정 : 28,453백만원 × (1 + 0.1244) = 31,992백만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통장이장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상여금 연 200%
 - 회의참석수당 1회 20천원(월 2회)
- 반장 : 연 50천원
- 이장반장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곡성읍	오곡	삼기	석곡	목사동	죽곡	고달	옥과	입	겸	오산
이장	272	29	22	26	31	25	28	14	23	30	22	22
반장	497	109	41	32	33	29	39	33	65	52	38	26

- 이장수당 : 200천원 × 272명 × 12월 = 652,800천원
- 이장상여금 : 200천원 × 272명 × 2회 = 108,800천원
- 이장회의 참석수당 : 20천원 × 272명 × 2회 × 12월 = 130,560천원
- 반장활동비 : 25천원 × 497명 × 2회 = 24,85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공무원 및 무기계약 맞춤형 복지지원 1,161천원 × 850명 = 985,85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일 · 1야당 50천원 이내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300	685
인건비 절감	292	269
지방의회경비 절감	2	0
업무추진비 절감	14	3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172	-25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773	-591
지방청사 관리·운영	1,391	1,222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554	-61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57	+49
지방세 체납액 축소	+530	-105
경상세외수입 확충	-453	-5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87	-507
탄력세율 적용	+133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곡성군이 법령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2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우리 곡성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없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